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7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소병훈・민병덕・이수진

안태준 • 서영석 • 이춘석

허 영·정성호·김교흥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 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을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u>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u><신 설></u>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아
	동수당을 보호자에게 지급하여
	<u>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